

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경륜·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경주개최계획서) 현행과 같음

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경고문구”를 “경고문구 등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출하여야”를 “제출해야”로 한다.

제19조의2제1항제6호 중 “2017년 1월 1일”을 “2022년 1월 1일”로 한다.

<부칙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경주개최계획서) 영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주시행허가를 받은 자(이하 “경주사업자”라 한다)가 작성하는 경주개최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.	제4조(경주개최계획서)(현행과 같음) * <u>별지 제3호 서식(경주개최계획서) 개정</u>
제15조(<u>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</u>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.	제15조(<u>경고문구 등의 표시 내용 및 방법</u>) (현행과 같음) * <u>별표2(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) 개정</u>
제19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<u>하여야 한다</u> . 1. ~ 5. (생략) 6.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: <u>2017년 1월 1일</u> ② 삭제	제19조의2(규제의 재검토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야 한다</u> 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<u>2022년 1월 1일</u> ② (현행과 같음)
	<부 칙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주개최계획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경주사업자의 명칭			
대표자의 성명			
경주의 종류 (경 륜 ・ 경 정)			
경주장의 위치			
연간 경주개최일수			
연간 경주의 종류 및 횟수			
전자적 형태의 승자 투표권 발매 규모			

「경륜·경정법」 제4조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주
개최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경주운영계획서 1부 2. 수지예산서 1부	수수료 없음		
처리절차				
경주계획서 작성 신청인	→ 접수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 검토·확인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 승인 처리기관 (문화체육관광부)	→ 통보

경고문구 등의 표시 내용 및 방법(제15조 관련)

1. 표시내용

- 가. 지나친 구매행위의 폐해를 알리는 문구
- 나. 소액구매 및 건전구매를 유도하는 문구
- 다.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
- 라. 중독예방치유상담전화의 전화번호

2. 표시방법

- 가.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 안에 한글로 "경고: "라고 표시하고 제1호의 표시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하되, 승자투표권의 앞·뒷면에 각기 다른 내용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
- 나. 사각형의 크기는 승자투표권은 앞·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시하고, 스티커(붙임딱지)·포스터·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

(단위: 밀리미터)

광 고 면 적	표 준 규 격	사각형의 크기
B4 초과	364×257 초과	112×25 초과
B4	364×257	112×25
A4	297×210	94×20
B5	257×182	80×17.5
A5	210×148	62×15
A5 미만	210×148 미만	62×15 미만

- 다. 경고문구의 글씨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여야 한다.
- 라.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승자투표권 또는 광고의 특성에 맞게 하되, 표시 내용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색(補色) 관계에 있는 색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마. 표시 위치는 승자투표권은 앞·뒷면 하단으로 하고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시스템은 화면 상단의 잘 보이는 곳으로, 스티커·포스터·홍보자료 또는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.